

충주시의회 및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충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합니다.

## 충 주 시 장

인

2020년 11월 27일

충주시조례 제1893호

### 충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충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로 하며, 제10조를 제15조로 하고,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기구) 협의회는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둘 수 있다.

1. 사무국
2. 운영위원회
3. 분과위원회
4. 특별위원회

제12조(운영위원회) ① 협의회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20명 내외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당연직위원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의 심의
2. 예산 및 결산사항의 심의

3. 회계연도 전체사업의 평가

4. 분과위원회 사업의 조정

5. 공모사업의 심의·결정

6. 그 밖에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의 의결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협의회에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총회 등)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공동회장,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

② 총회는 협의회 전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의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매년1회에,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회장은 협의회의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회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 ④ 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각 소속위원장이 사안별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3장에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지속가능성보고서 제출 및 공표) ① 협의회는 지속가능성보고서 (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연1회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11조(종전의 제9조)제2항 중 “둘 수 있으며, 임기 및 정년 등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 ③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사무국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 ⑤ 사무국 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규정은 협의회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에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8조(결산) 연도별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보고서와 함께 회계감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감사) ① 협의회는 건전한 재정운영 및 사업추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회계전문가 1명을 감사로 둔다.

② 감사는 정기총회 개최 전에 분야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사업의 평가) 운영위원회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회계연도에 추진한 사업의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작성,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앞에 “제4장 재정지원 등”을 삭제한다.

제21조 앞에 “제4장 재정지원 등”을 삽입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  
의 임기와 사무국장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구성) ① ~ ④ (생략)</p> <p><u>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p> <p>제8조(운영) <u>협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안에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협의하여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u></p> <p><u>&lt;신설&gt;</u></p>	<p>제7조(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p> <p><u>&lt;삭제&gt;</u></p> <p>제8조(임기) <u>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u></p> <p>제9조(해촉) <u>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u></li> <li><u>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u></li> <li><u>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 불참</u></li> </ol>

<신 설>

제9조(사무국) ① (생 략)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임기 및 정년 등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기구) 협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둘 수 있다.

1. 사무국
2. 운영위원회
3. 분과위원회
4. 특별위원회

제11조(사무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 둔다.

③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사무국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⑤ 사무국 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규정은 협회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⑥-----  
-----.

<신 설>

1. ~ 3. (생 략)

<신 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  
까지와 같음)

제12조(운영위원회) ① 협의회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  
여 20명 이내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  
의 위원장과 당연직위원이 된  
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의 심의
2. 예산 및 결산사항의 심의
3. 회계연도 전체사업의 평가
4. 분과위원회 사업의 조정
5. 공모사업의 심의·결정
6. 그 밖에 업무추진에 관한 사  
항의 의결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제13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신 설>

<신 설>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협의회에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총회 등)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3. 공동회장,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

② 총회는 협의회 전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의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매년1회에,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제10조 (생략)

<신설>

<신설>

하는 경우 개최한다. 회장은 협의회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회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④ 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각 소속위원장이 사안별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제16조(지속가능성보고서 제출 및

공표) ① 협의회는 지속가능성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연1회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17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4장 재정지원 등

<신 설>

제11조 ~ 제16조 (생 략)

부칙

제18조(결산) 연도별 결산은 회계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보고서와 함께 회계감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감사) ① 협의회는 건전한 재정운영 및 사업추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회계전문가 1명을 감사로 둔다.

② 감사는 정기총회 개최 전에 분야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사업의 평가) 운영위원회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회계연도에 추진한 사업의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작성,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4장 재정지원 등

제21조 ~ 제26조 (현행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와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  
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임원의 임기와 사무국장의 임기  
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 임기만  
료일까지로 한다